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가단506311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나125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가단5063117 판결

전문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변론 종결 2015. 11. 3. (피고 1 내지 6에 대하여)

2015. 12. 15. (피고 7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6. 2. 2.

주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A은 30,896,597원 및 그 중 29,752,293원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9,752,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F, 피고 G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F,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5. 피고 A과 피고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금액 3,78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011. 1. 5.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받았다.

다.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우리은행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우리은행에 39,273,69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F 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로 원고에게 2013. 6. 28. 9,450,000원, 2013. 7. 8. 20,453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의 이 사건 대출금 편취의 불법행위 경위

(1) 피고 A은 피고 B, 피고 C, 피고 D과 공모하여 허위로 재직관련서류 및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 A이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A을 직원으로 기재한 피고 D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B, 피고 C은 피고 A과 함께 강북구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이 사건 대출금 편취를 공모한 피고 E과 만나 피고 G 소유의 '서울 강북구 J 1동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허위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인 피고 G, 임차인 피고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다.

(3) 피고 B, 피고 C은 2010. 12. 27. 피고 A과 같이 우리은행 송파역 지점에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을 제출하여 4,2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이를 임대인 피고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이하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4,2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불법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피고 A,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피고 B, 피고 E에 대하여)

3.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F는 피고 E로부터 주택 임대인 명의를 대여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 G, 임차인 피고 A으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데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한 우리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피고 F가 가담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F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1 내지 6호증,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피고 F가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 F가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G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 피고 A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사실확인없이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 사건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가 되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G의 주장 피고 G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일 뿐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으며 피고 G의 어머니인 피고 F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자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말만 믿고 이를 반환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한 바도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G의 위 행위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G은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 판단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G은 피고 F의 아들이고, 피고 G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G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G이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 G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진정한 임대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 피고 G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전세자금을 편취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F, 피고 G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정엽